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55
------	------

2017. 11. 29.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8월 17일, 김영한 의원 외 13명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 제11차 기획경제위원회(2017.11.29)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영한 의원)

1. 제안이유

- 도시농업의 정의에 곤충사육(양봉 포함)을 추가하고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는 등 최근 개정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농업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효율적인 도시농업 지원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도시농업, 도시농업관리사 등 개정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 도시농업위원회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2)
-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하고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 청문절차에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
-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사회적 약자 및 어르신·어린이를 위한 반려식물 보급 등에 관한 사업, 농부의 시장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20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농업위원회의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안 제2조, 제13조의2, 제16조)

- 국회는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농업관리사를 도입하는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을 2017년 3월에 개정하였음(붙임자료 1 참고)
- 개정된 도시농업법 제2조 제1호는 농작물의 경작·재배로 한정되어 있는 도시농업의 정의에 수목 또는 화초의 재배, 곤충사육(양봉)을 추가하여 외연을 확대하고 있음.
- 이는 도시농업이 농작물의 경작·재배에 머물지 않고 생활원예, 양봉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도시 인근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농업활동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안 제2조 제1호는 개정된 도시농업법의 정의를 그대로 반영한

것임.

현행 조례	조례 개정안	비고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p>	<p>법률 개정 사항 반영</p>

- 또한 도시농업법은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농업 기술을 보급하고자 국가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를 도입하였으며 안 제2조 제7호의 정의와 제16조 제3호의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현행 조례	조례 개정안	비고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7.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p>	<p>법률 개정 사항 반영</p>

	<u>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u>	
<u>제16조(청문)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 이때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u>	<u>제16조(청문)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 이때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u> 1. <u>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취소</u> 2. <u>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u> 3. <u>법 제11조의3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u>	법률 개정 사항 반영

- 한편 도시농업법은 국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의 날의 취지에 맞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의2는 도시농업법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도시농업의 개념이 생소하거나 관련 지식이 부족한 시민에게 도시농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됨.

현행 조례	조례 개정안	비고
<신설>	<u>제13조의2(도시농업의 날) ① 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u>	법률 개정 사항 반영

	<p>정한다.</p> <p>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

다. 도시농업위원회의 운영 현황(안 제5조부터 제6조의2)

- 서울시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도시농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도시농업 중장기 비전 설정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도시농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붙임자료 2 참고)
- 안 제5조 제2항과 제6조 제2항은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며 제6조 제6항은 위원회가 성별, 직능별로 균형있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현행 조례	조례 개정안
<p><u>제5조(위원회의 설치)</u>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제4조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p> <p>2. 도시농업의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p> <p>3.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중장기 비전 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u>제5조(위원회의 설치·기능 등)</u>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p> <p>1. 제4조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p> <p>2. 도시농업의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p> <p>3.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중장기 비전 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p>

	<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진흥본부장과 위촉직 위원중에 선출된 1명으로 하고, <u>부위원장 1명은 호선한다.</u>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u>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u> 추천한 시의원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진흥본부장과 위촉직 위원중에 선출된 1명으로 하고, <u>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u>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u>서울특별시의회에서</u> 추천한 시의원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u>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 또한 안 제6조의2는 특정사항 등에 대하여 10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도시농업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행 조례	조례 개정안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6조의2(소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위원회는 <u>전문적·효율적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② <u>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③ <u>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의 할 수 있다.</u> ④ <u>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u></p>

라.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안 제20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1항은 도시농업 사업 중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는 최근 추진 중인 반려식물의 보급 사업, 농부의 시장 사업을 추가하는 것임.

현행 조례	조례 개정안
<p>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7. 서울시 <u>인접</u> 시·군에 서울시민을 위한 주말농장(텃밭)조성 사업 <u><신설></u></p> <p><u><신설></u></p> <p>8.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생략)</p>	<p>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서울시 <u>인근</u> 시·군에 서울시민을 위한 주말농장(텃밭)조성 사업</p> <p>8. <u>사회적 약자 및 어르신·어린이를 위한 반려식물 보급 등에 관한 사업</u></p> <p>9. <u>농부의 시장에 관한 사업</u></p> <p>10.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현행과 같음)</p>

- 이는 사회적 약자에게 도시농업의 치유적 기능을 통하여 위안과 평안,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으며 도시농업의 판로 확대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종합의견

- 도시농업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경제성장과 함께 취미·여가 활동으로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도시농업의 날 지정은 도시농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도시농업의 외연 확대는 도시농업에 대한 더 많은 참여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55
----------	---------

제안년월일 : 2017년 11월 29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여성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을 “특정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과 지원 조건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체계성을 제고하였음.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도시농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6조 제6항)
- 나.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제4항)
- 다.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중 “심의 또는 자문”을 “심의”로 한다.

안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특정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소위원회 설치·운영)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안건은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20조제1항제7호 중 “인근”을 “인접”으로 하고 제20조제1항제8호와

제20조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 제20조제1항제10호를 제20조제1항제8호로 하며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 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p> <p>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p> <p>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p> <p>2. ~ 6. (현행과 같음)</p> <p>7.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p>	<p>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안과 같음></p>

	<u>취득한 사람을 말한다.</u>	
<p><u>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u> <u>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u> <u>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u> <u>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u> <u>울특별시도시농업위원회(이</u> <u>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u> <u>다.</u></p> <p>1. <u>제4조의 시행계획의 수립</u> <u>및 변경에 관한 사항</u></p> <p>2. <u>도시농업의 관련 연구,</u> <u>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u> <u>한 사항</u></p> <p>3. <u>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u> <u>중장기 비전설정 및 실</u> <u>천계획에 관한 사항</u></p> <p>4. <u>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u> <u>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u> <u>고 인정하는 사항</u></p>	<p><u>제5조(위원회의 설치·기능</u> <u>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u> <u>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u> <u>또는 자문을 위하여 서울</u> <u>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이</u> <u>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u> <u>다.</u></p> <p>②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u> <u>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u> <u>다.</u></p> <p>1. <u>제4조의 시행계획의 수</u> <u>립 및 변경에 관한 사</u> <u>항</u></p> <p>2. <u>도시농업의 관련 연구,</u> <u>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u> <u>한 사항</u></p> <p>3. <u>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u> <u>중장기 비전설정 및 실</u> <u>천계획에 관한 사항</u></p> <p>4. <u>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u> <u>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u> <u>고 인정하는 사항</u></p>	<p><u>제5조(위원회의 설치·기능</u> <u>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u> <u>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u> <u>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u> <u>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u> <u>라 한다)를 둔다.</u></p> <p>②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u> <u>사항을 심의한다.</u></p> <p>1. ~ 4. (개정안과 같음)</p>
<p><u>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u> <u>(생략)</u></p> <p>② <u>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u> <u>진흥본부장과 위촉직 위원중</u> <u>에 선출된 1명으로 하고, 부</u> <u>위원장 1명은 호선한다.</u></p> <p>③ <u>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u> <u>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u> <u>시장이 위촉한다.</u></p> <p>1. <u>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u> <u>추천한 시의원</u></p> <p>2. ~ 3. (생략)</p>	<p><u>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u> <u>(현행과 같음)</u></p> <p>② ----- ----- -----, <u>부위원장 1명은</u> <u>위원 중에서</u> -----.</p> <p>③ <u>위원회의 위원은 다음</u> <u>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u> <u>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1. <u>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u> <u>천한 시의원</u></p> <p>2. ~ 3. (현행과 같음)</p>	<p><u>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u> <u>⑤ <개정안과 같음></u></p>

<p>④ ~ ⑤ (생략)</p> <p><신설></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특정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6조의2(소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위원회는 전문적·효율적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③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의할 수 있다.</p> <p>④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제6조의2(소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안건은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④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13조의2(도시농업의 날) ① 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한다.</p> <p>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3조의2(도시농업의 날) <개정안과 같음></p>
<p>제16조(청문)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을</p>	<p>제16조(청문)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p>	<p>제16조(청문) <개정안과 같음></p>

<p>취소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 이때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p>	<p>을 하여야 하며, 이때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u>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취소</u>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u>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u>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u>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u> 	
<p>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생략) 7. 서울시 <u>인접</u> 시·군에 서울시민을 위한 주말농장(텃밭)조성 사업 <u><신설></u> <p><u><신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현행과 같음) 7. 서울시 <u>인근</u> 시·군에 서울시민을 위한 주말농장(텃밭)조성 사업 8. <u>사회적 약자 및 어르신·어린이를 위한 반려 식물 보급 등에 관한 사업</u> 9. <u>농부의 시장에 관한 사업</u> 10.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현행과 같음) 7. 서울시 <u>인접</u> 시·군에 서울시민을 위한 주말농장(텃밭)조성 사업 <u><삭제></u> <p><u><삭제></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u>이 조례는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u>	부칙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u>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와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7.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기능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중장기 비전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2항 중 “부위원장 1명은”을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로 하고 제6조제3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를 “서울특별시의회에서”로 하며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특정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6조의2(소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안건은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13조의2(도시농업의 날) ① 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한다.

제16조(청문)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 이때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 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p> <p>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p> <p>2. ~ 6. (현행과 같음)</p> <p>7.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제4조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p> <p>2. 도시농업의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p> <p>3.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중장기 비전설</p>	<p>제5조(위원회의 설치·기능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를 한다.</p> <p>1. 제4조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p> <p>2. 도시농업의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p>

<p><u>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u></p> <p>4. <u>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3. <u>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중장기 비전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u></p> <p>4. <u>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진흥본부장과 위촉직 위원중에 선출된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은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u>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u> 추천한 시의원</p> <p>2. ~ 3. (생략)</p> <p>④ ~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u>서울특별시의회의회에서</u> 추천한 시의원</p> <p>2. ~ 3.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특정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6조의2(소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안건은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④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3조의2(도시농업의 날) ① 시민에게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한다.</p> <p>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6조(청문) <u>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4</u></p>	<p>제16조(청문) <u>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u></p>

<p><u>조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 이때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u></p>	<p><u>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 이때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취소</u> 2. <u>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u> 3. <u>법 제11조의3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u>
<p>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의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u></p>